

제안요청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22. 09.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연구용역 개요.....	1
II.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4
III. 과업수행지침.....	9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4
V. 보안대책.....	15
VI. 제안서 작성방법.....	17
VII.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18

※ 별첨 및 첨부서류 양식

〈별첨〉 1. 제안서내용 및 가격평가 방법

- 〈양식〉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연구진 이력사항
 5. 보안서약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I. 연구용역 개요

1. 과 업 명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추진 배경

○ 1기 신도시는 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계획도시임

- '89년 「주택공급 200만호」 계획 발표 → 5개 신도시 개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총 면적 50.1km², 주택수 29.2만호, 평균 용적률 198% 등

- '21년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 '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 예정

* 최초입주 : 분당('91.9), 일산('92.8), 평촌('92.3), 산본('92.4), 중동('93.2)

○ 주택과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가 필요

- '91~'96년 5년간 공급이 모두 이루어져 대부분 단지의 건령과 노후도가 유사 → 정비사업 요구 시점이 몰려있음

- 2·3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기존 인프라도 30년 가까이 경과되는 등 노후화

○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 높음

-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정비를 요구

*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주민의식조사, 경기연)

- 교통망 확충, 녹지공간 확대 등 지역 환경 개선도 필요

* (도시간 교통망 확충) 56.6%(일산) / (녹지공간 확대 필요) 47.1%(중동) 등 (주민의식조사, 경기연)

◆ 도시기능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 추진 필요

☞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안) 마련 추진

3. 과업의 목적

-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22.9.8,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합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 기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③ <u>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u>
<u>(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하며 동시 추진)</u>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⑤ 1기 신도시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키로 함.⑦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 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
|--|

-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1.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2.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 과업의 목적은 마스터플랜 중 “1.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마스터플랜 중 “2.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본 과업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별도의 용역(23.1월까지 발주 예정)을 통해 수립하되,

-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정비기본방침’ 및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특별법(안)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도록 할 것임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

※ 1차년도(계약일 ~ 12개월) / 2차년도(13개월 ~ 24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비용 : 1,500백만원

※ 1차년도 : 800백만원 / 2차년도 : 700백만원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1. 정비기본방침” 수립

(1)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여건 상세 분석

○ 마스터플래너를 통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수시) 및 마스터플랜에 반영 방안 마련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통 실시

○ 1기 신도시 현황 조사

- 1기 신도시 일반 현황 분석
-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도시계획 분석 및 현 시점 평가
- 1기 신도시 위상 및 기능 평가
- 1기 신도시 주택 등 시설 노후도, 기반시설 여유도 분석 등

○ 1기 신도시 외 노후도시에 대한 현황 조사

-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노후 구도심, 지방거점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현황 분석

* 향후 국회 논의과정 등에 따라 노후도시 범위는 변동 가능

○ 기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여건 상세 분석에 필요한 사항

(2)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필요성 및 현행 제도 검토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특성 등 분석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정비 필요성 분석
- 현행 도시 정비 관련 제도(도시재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적용 가능성 및 제약요건 분석
 -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제도(재건축·리모델링 등) 분석 등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 내용 도출
- 기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필요성 등 도출에 필요한 사항

(3)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성 도출 등

- 인구구조 재편,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공간구조 재편방향 도출
-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시 기능강화를 위한 방향성 도출에 필요한 기타 사항

(4) 1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 수립

- 1기 신도시 등 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도출
- 1기 신도시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도출
 -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 방안
 - 자족기능 확보 등 도시기능 재편 방향
 - 상위법정계획(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검토·분석 등
-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추진절차 등 검토
 - 1기 신도시 등 정비기본방침 적용 대상지역 기준 검토
 -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 절차, 사업구조, 사업형태, 사업방식 등 방안 검토 및 마련 등
-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재원 추정, 소요재원 확보 등 방안 마련
 - UAM, 자율차 등 새로운 기반시설 종류 및 확충방안 마련 등
- 건축·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 필요사항 도출
 -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범위 및 내용 검토
 - 조세감면 등 이주기업, 사업자 금융지원방안 검토·마련
 - 기금·보증 등 기타 금융지원 방안 검토·마련
 - 특례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안 검토·마련 등

-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 이주수요 분석 및 이주수요 관리 방안 검토
 -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단계별, 순차적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이주에 소요되는 금융 수요 및 지원 방안 모색 등
- 선도지구 지정 및 추진방안 마련
- 기타 정비기본방침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5)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검토

-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시뮬레이션 등 공급방안 마련
- 추가 기반시설 설치 규모 및 사업비 등 추정

(6)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정비 추진체계 고찰 등

-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기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한 사항

※ 마스터플랜 중 “2.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본 과업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며, '23.1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발주 예정

2.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제도화 방안 마련

(1) 현행 제도 및 既 발의법안 검토

○ 현행 제도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 분석

- 현행 도시개발 등 기존 제도 분석(도시개발, 도시정비, 도시재생 등)
- 기존 도시개발 등 제도상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 도출

○ 既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의 적정성 검토·분석

- 既 발의법안 비교 및 정비기본방침 연계성 여부 검토 등
- '22.9.19일 기준 총 8개 법안 발의

(2) 1기 신도시 등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가칭) 마련 등 입법화 방안 검토

○ 1기 신도시 등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마련

- 정비기본방침 및 사업추진 관련 법적 근거 및 위상 마련
 - 정비 목적, 대상,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설정
 - 정비 추진절차 및 체계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선도지구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건축·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순차적·단계적 정비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이주수요 관리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 정비 시 기타 필요한 제도화 방안

○ 1기 신도시 등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가칭) 마련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

3.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마련 관련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지원

- 정비기본방침과 각 신도시별 각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특별법 간 상호 연계성 확보
- 마스터플랜 수립시 주민·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대응
- 마스터플랜,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 일체
- 마스터플랜, 특별법(안)의 설명, 안내 등에 필요한 홍보 등 제반 업무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6)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7) 본 과업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8)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진행하며 과업수행자는 대표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공동발주기관인 LH(LHI), 한국부동산원, HUG와 상호 적극 협조한다.

- 본 과업은 향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2.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신도시별 지자체 및 해당 과업 수행자와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자문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5) 성과품 소유

-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준공시	20부 USB 1식	과업의 최종결과

※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V.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2017.7.13.)」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자문위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의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만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용역계약자는 자체 보안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를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서류의 파기,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발주청에 보고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2017.7.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 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5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추진일정

- 착수보고서 제출 :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고, 준공 15일전에 제출

VII.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전화 044-201-4959)
- 기타 관련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는 발표평가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발표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공고일로부터 발표일까지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의 비중으로 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업체 선정

☐ 보안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단,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외 국토교통부에서 필요시 추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 추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으로 통지할 예정이니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 추가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① 제안서 내용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점수
정량 평가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금액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연구 및 용역수행 실적(국토·도시 분야 및 법제연구 분야로 한정)	10
	경영상태	○ 회사채, 기업어음 상태 등 신용평가등급	10
정성 평가	과업 접근방법	○ 본 용역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국토·도시분야 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관련 연구, 분석 능력 및 노하우 ○ 본 용역 추진의 적합성 및 지원역량 ○ 사업 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30
	추진체계 및 일정	○ 과업 목적(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 달성을 위한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합성 ○ 연구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합리적 연구결과 도출 가능성	30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용역수행의 적극성 및 위험요소 해결능력 ○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	10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10
계			100

1. 수행실적

가. 건수: 해당사업규모 금액으로 평가함으로 실적평가 삭제

나.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정성평가(80)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점	평가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80점)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	30	30	24	18	12	8
	과업추진체계 및 일정	30	30	24	18	12	8
	산출물 평가	10	10	8	6	4	2
	기타항목	10	10	8	6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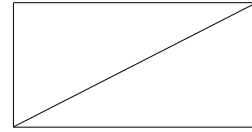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내용평가득점 × 80%

※ 내용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② 제안서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평가
(배점한도 20%)



과업제안서

용역명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양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 **연구** 』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 1 활용)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양식 2 활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양식 3 활용)
4.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 4 활용)
5. 보안 서약서 (양식 5 활용)
6. 청렴계약서 (양식 6 활용)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